

입양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강춘근* · 신민선**

논문초록

입양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법적인 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의 요구에 의해 제기 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본 논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입양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모색한 글이다. 교회공동체는 종교적 기능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따라 사회현안의 문제를 신앙의 실천적 과제에 충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한국교회가 입양문제와 같은 사회현안의 문제를 선교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며, 교회공동체가 입양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입양의 현실과 문제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앙의 실천적 과제의 하나로 여기는 입양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고에서는 한국교회가 입양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로 규범 제시자, 이슈 제기자, 서비스 제공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자원 조달자, 사례 관리자, 정책형성 과정 개입자로서 그 역할을 각각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 입양, 국내입양, 국외입양, 입양사업, 한국교회의 역할

* 목사, 천안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제1저자

** 경결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입양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입양의 필요성
- III. 우리나라 입양의 현실과 문제점
- IV. 입양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해외입양 세계 1위’, ‘지구촌 최대의 고아수출국’이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타이틀을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입양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시작된 1954년 이후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 약 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¹⁾ 물론 국내에서도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으로 보내는 아이에 비해 약 3분의 1 정도만이 국내에 입양되고 있다.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벌어진다.²⁾ 절대빈곤 상태였던 1960년대 까지 우리나라가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요로워져 ‘먹고살 만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모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³⁾ 특히 입양대상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아

1) 현재까지 장애아동은 약 3만 3천명의 아이들이 외국으로 보내어졌고, 국내에는 약 160명 정도만 입양되었다. 2004년 한해에도 장애아동은 해외입양이 705명이며, 국내는 7명으로 국외입양의 100분의 1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2)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958년부터 2003년까지 해외입양 아동 수는 152,786명이며, 같은 기간 국내입양 아동 수는 해외입양의 40%가 채 안되는 64,505명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2004년도 한해만 해도, 해외입양 아동이 2,258명이며, 국내입양은 1,641명이다.

3)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7위로 보고 되고 있

동들이 미혼모의 자녀이고 또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혈연과 가문을 중시하는 유교문화가 크게 작용하여 왔기 때문에 입양에 개방적이거나 너그럽지 못하였다. 가령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과 “피붙이”라는 말을 표현해 온 것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혈연중심적인 가족관과 문화를 보여주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는 전통사회에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대가 끊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입양을 고려조차 하지 않은 소극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⁴⁾

입양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도 일반 사회의 사람들과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 분위기 또한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그 동안 한국교회가 입양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인식 그리고 입양문제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적 책임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해 온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교회의 이런 분위기는 신학에도 반영되어 입양에 대한 신학적, 기독교 윤리학적 논문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신원하, 2004: 251).⁵⁾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고, 또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의 11위가 될 정도로 경제가 성장한 지금도 우리나라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야 하는가는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다.

- 4) 혹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혈연주의 때문에 입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글도 있다. 2003년 황나미의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불임율이 14.6%나 되어 불임으로 고민하는 가정이 110만 가정이 넘는다는 것과, 또 2001년 국정 홍보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8.5%가 입양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박인선은 이러한 조사는 국내입양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5) 한국교회가 입양신학과 윤리적 실천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신원하는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 아직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혈연중심주의적 유교문화의 영향, 둘째,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 마지막으로 혈연중심주의적 언약 백성관 등의 잘못된 신학사상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독교적 바른 가족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강조하며 기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정신에 충실하다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그리고 약하고 버림받은 입양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입양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는 입양문제를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한국교회가 입양문제를 선교적 관점과 신앙의 실천적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이미 선교 120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상당한 발전의 단계에 이르렀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커다란 비중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사역과 기능이 있고, 또 조직체로서의 교회공동체는 사회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에 교회공동체는 종교적 기능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따라 각각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교회공동체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입양문제와 같은 사회현안의 문제를 선교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사업이나 운동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바로 잡고 해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교회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입양문제와 같은 시대적인 현실 앞에 기독교의 사랑의 실천적 행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입양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입양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 확립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6)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대형교회들이 집중해 있으며,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지만 그리스도인 비율로 볼 때 비례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이며, 국내적으로는 가장 큰 종교집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하고 특수한 한국교회가 세계와 국내사회에 할 일과 책임은 너무나 크다.

한국교회가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성경적이고 신학적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입양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입양 사업에 대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II. 입양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입양의 필요성

1. 입양에 대한 성서적 이해

(1) 성서 주변세계에 나타난 입양의 풍속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입양이 시행되었음을 볼 때 입양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근동 연구가 박스(G. H. Box)는 고대 바빌로니아 전통을 기록하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조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입양절차가 기록되어 있는 1925년 이래 티그리스 강 주위에서 발견된 누지 토판(Nuzi tablets)을 통해, 입양이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Zuck, 1996: 96). 박스에 의하면 함무라비 법전 185항 이하에서 “입양에 관한 기록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등장하는 사례는 부부가 자식을 갖지 못해 그들의 후속세대가 없을 경우, 자신들이 형성한 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Box, 114-115: 재인용, 이상훈, 2004: 9)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혼한 아내로부터 자녀가 없을 경우 아내의 목인아래 그녀의 하인 등을 공공연하게 첩으로 맞아드리도록 허용되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양사례를 흔하게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보다 실제로 존재했던 입양의 기록은 결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모두 떠나가고 노년에 자신들을 돌보아줄 후손이 없을 경우에 이루어지곤 하였다. 이때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를 성심껏 돌보아드린다는 전제하에 훗날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원래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질 재산을 제외한 몫을 상속으로

받기도 하였다”(이상훈, 2004: 15). 또 다른 형태의 입양에 대한 기록은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즉 도제의 관계에서 제자로 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접하게 된다. 이 경우 종종 자신의 노예들 중에서 입양의 대상이 정해지기도 하였는데, 일단 입양된 자들은 자유가 그 보상으로 주어졌다.

이들을 종합해서 볼 때 성서 이외의 고대근동에서 이루어지는 입양 사례는 주로 피 입양인 중심의 입양이 아닌, 입양인 중심의 습속들, 즉 경제적 이유, 특히 재산의 보호라든가 노동력의 획득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입양주제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

① 구약성서에 나타난 입양의 모습

같은 고대 근동에 위치한 사회였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빌로니아의 경우, 입양이 주로 ‘경제권’과 같은 이권의 지속적인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세태와 비교할 때 이스라엘 고대 역사를 담고 있는 성서에서는 입양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동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특별한 의식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는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ikos)이다’라고 말하고 있다(히 3:2-6)는 점을 상기시키면서(히 3:2-6),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구약성서의 민수기 12:7을 언급하고 있다(Christopher J. H. Wright, 1989: 237-238). 성서의 모세 오경 중 한 부분을 이루는 민수기에는 고대 이집트의 확정 아래 시달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영도아래 가나안으로의 대탈출을 시도하면서 특별한 선민의식이 태동했음을 전하고 있다. 즉, 모세를 최고칭지기로 하는 하나님의 집과 그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인들을 뜻하는 ‘운명공동체적’ 결속으로 이어지는 민족단위의 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여호와와 그의 집’은 그들이 이집트, 곧 ‘중 되었던 집’에 있었을 때 그들이 겪었던 곤경과 종종 대조되고 있다.⁷⁾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자의식을 갖게 되는데,⁸⁾ 이때, ‘선택된 민족’이라는 공동체적 동질감은 곧 한 개인이 신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경험은 이제 또 다른 ‘선택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였던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방인들 -자연적으로 ‘집’에 소속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을 특별히 돌보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의 근거로 이어지고 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잃어버려졌으며, 피압박의 대명사’였던 ‘히브리인’ 그 종족들이 이제 신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집’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니 그 피택의 감격으로 항시 그들이 과거에 처해진 형편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과거의 자신들과 동일한 형편에 처해진 이들을 돌보는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식이 싹뻗던 것이다.

이상의 구약에서 시작된 ‘선택의 백성’의 개념은 이후 성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로 부각된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율법과 이스라엘에서 입양에 대한 기사는 발견할 수 없고 ‘입양’을 의미하는 단어 자체도 나타나지 않는다.⁹⁾ 실제로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입양에 관한 제도가 없었고 또

7)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것을 “하나님의 집, 가족, 유업으로서 이스라엘 전 백성과 땅을 결합시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이 비유의 요점은 그들이 단순히 한 나라나 각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동질성, 즉 동등하게 하나님께 속한 집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다.

8)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자의식은 야훼에 대한 경외와 예배를 일상사로 삼는 공동체적 연대성의 유지로 확장되며,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제로 각기 자신의 가정에서 야훼에 대한 예배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의식이 더욱 공고히 성장한다. 이러한 의식적 연대 아래 각 개인은 더불어 존재하는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깊은 소속감을 느끼며, 동시에 위기를 겪을 때 이 공동체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담보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자라게 되었다.

9) 기독교 윤리학자인 신원하는 구약성경에 입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입양의 이미지와 은유의 형식으로 주요한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입양이 시행되었다는 기록도 찾기 힘들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주체의 동인이 될 수 있는 이미지와 은유가 구약성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② 신약성서에서의 입양

신약성서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양자 됨’(롬 9:4), ‘아들의 명분’(갈 4:5), ‘아들이 되게’(엡 1:5) 등의 형태로 그 의미가 확산된다. 신약성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일컬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되어 그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정의한다. 성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의 신분이 본질적, 생래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 은총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신자들은 파생적이며 이차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자각이 생긴다.

즉, 본래는 죄와 사망아래 놓여있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들들의 자격을 얻도록 ‘양자 삼아졌다’는 사실을 기꺼이 용인하게 된다. 이때, ‘아들 혹은 자녀의 명분’을 얻는 체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주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는 체험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은, 이제 그 경험을 통하여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양자삼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생긴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른다. 즉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 땅 중 되었던 때’를 기억함으로 ‘과부와 고아’에게 선행을 베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맺은 언약에서도 입양이라는 은유적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10) 이상훈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구체적 입양사례에 대한 기록을 두 가지 유형의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문내부에서의 입양사례이고 또 하나는 가문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이상훈(2005:13-16)을 참조하시오.

는 의식과 동일한 선상에서 ‘구속자(Redeemer)’로서 모든 사리(私利)를 버린 하나님의 자기희생에 대한 감사의 증거로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이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동기를 유발케 하는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이상훈, 2004: 12).

특히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성도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됨 즉 입양의 이미지로 설명하는데,¹¹⁾ 그것은 당시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던 입양제도가 구속의 도리를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모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²⁾ 바울은 이런 당시 법적 사회적 제도의 내용을 유추하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자가 되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 입양이라는 은유를 사용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고대 중,근동 사회나 신약의 배경인 그리스-로마 사회에서는 입양의 일차적인 목적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가계를 계승하고 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가정적, 경제적 이유가 큰 목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부모 없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차원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성서시대 사회에서 시행된 입양은 오늘날 약한 자와 부모 없는 자를 돌보기 위해 기독교인이 강조하는 입양행위와는 그 동기와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의 입양에 규범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행위로서 양자삼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입양행위는 오늘날 기

11) 바울은 입양(자)을 의미하는 단어(hyiothesis)를 때로는 양자(adoption, 롬 8:15, 23, 9:4)로, 때로는 아들(sonship, 갈 4:5, 엡 1:5)로 쓰면서, 다섯 부분 중 한 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을 받은 국가였음을 상기하고(롬9:4), 나머지 네 곳에서는 입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 개인이 입양되었음을 묘사하는데 쓴다.

12) 사도 바울의 당시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입양자는 친자가 갖는 권리와 동일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누렸다. 양부는 자신의 이름, 가문, 그리고 기업을 계승하기 위한 의도로 양자를 들이기에 양자는 친자에 비해서 신분상으로는 법상으로 조금도 열등하지 않았다. 또 입양자는 새 가족의 일원이 되어 그 가족이 주는 신분, 권리 그리고 의무까지 모두 부과 받았다.

독교인이 부모 없는 자를 아들로 삼는 입양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과 유용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본다(신원하, 2004: 253).

2. 입양문제에 대해 교회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1)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공동체의 사회적 책임

기독교 신앙은 성서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르기로 하는 신앙고백으로부터 출발하며, 교회공동체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또한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세상에 있으면서도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지향한다. 따라서 교회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양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양으로든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을 맺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서는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기사로 시작하고 있으며,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름답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실패했다. 오히려 세상 안에서 인간은 온갖 불의와 악을 자행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인간에 의해 이 세상에는 온갖 불의와 부정, 그리고 범죄와 비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섭리의 지배아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뜻에 맞게 그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신다.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신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

양된 그리스도인은 뒤뜰어진 이 사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의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임인 교회공동체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속 사업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은 수많은 종류의 문제로 인해 어둡게 되었고 맛을 잃었으며 썩어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제 문제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현실의 모든 영역에 진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것이다(이원규, 2002: 21). 즉, 교회공동체는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책임이 있으며, 또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가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서적, 신학적 명제의 하나이며 또한 신앙의 실천적 과제의 하나이다.

(2) 교회공동체가 입양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교회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교회공동체는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교회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회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구원할 선교의 사명에 있다. 동시에 교회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는 영적공동체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눅 18:22, 딤후 6:18, 히 13:16).

교회공동체가 사회를 위해 사랑을 나눠주는 삶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데, 우리 시대에 필요한 나눔의 삶 중 하나가 입양이다. 물론 입양은

단순한 구제행위와 엄청나게 다르고 또 입양을 하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이 충일해야만 가능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보다 진할 수 없다는 신앙고백을 기초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입양문제와 같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 물론 구체적으로 입양과 같은 선한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어린 한 생명을 입양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교회공동체가 입양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문제를 치료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며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가 입양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속사업에 동참하는 행위 즉, 한 영혼을 향해 떠나는 고귀한 선교(mission)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할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공동체가 입양에 관심을 가져야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성서가 가르치는 원리적 측면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그리스도께 입양된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자이다.¹³⁾ 그렇기에

유아라 하더라도 부모의 혈통에 의해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됨을 알 수 있다 (고전 7:4). 부모의 피를 나누지 못한 입양된 자식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입양된 이상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공동체 속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들도 언약 백성의 가족에 주어진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은혜의 언약은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도 확대하여 주셨다. 그러나 이 언약의 축복은 혈통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 백성의 보호아래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었고, 이는 신약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천명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언약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개념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과 새로운 전환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은 혈연주의적이다. 혈통에 의하여 가족이 형성되며 핏줄을 통해서만 자손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입양을 꺼려하고 입양아가 주변에 있으면 입방아를 찧기도 하며, 입양의 경우에도 남아보다는 여아의 입양이 많고 정상아에 비해서 장애아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공개입양보다는 비밀입양의 형태를 추구한다. 그러나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가족 뿐 만 아니라 자기 친족과 지파도 일종의 확대된 가족개념으로 생각해서 이들을 돌보아야 했기에 때로는 자기 지파와 친족 중에서 아비 없는 고아를 자기 집 안에서 함께 돌보아주며 함께 살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입양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친족을 돌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공동적 사랑의 명령을 주신다(레 19:8). 여기서 이웃의 개념은 자기 식솔(household)이나

13) 롬 8:15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하였고, 고전 15:50에는 “또 바울은 피와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친족을 넘어서 가난한 자, 일일 노동자, 과부와 고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외국인들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었다(Leo Perduce, 1997: 238).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고아를 비롯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돌봐주기를 요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족의식도 혈연주의적이지 않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적이며 사랑 공동체적이었다.14) 요 1:12-13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고 했으며, 딤후 1:2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였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가족개념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안에서 성도들을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족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전통적인 혈연과 가문을 중시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참된 영적 경건은 고아를 돌보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가난하고 억눌린 자, 약하고 버림받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신다.15)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

14)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막 3:31-35)고 하였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임종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네 어머니라”(요 19:27)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족의식을 잘 표현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사상과 정신은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

을 살펴볼 때 의지할 자 없는 고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가운데서 나름대로 고아를 돌보며 사랑의 마음을 나눠 주어야 한다. 그들을 찾아 위로하고 돌아 보기도 하고 또 기관이나 시설에 후원도 하며 관심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입양을 하는 일이다.

넷째, 자녀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중요한 책임은 자녀를 잘 양육하여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다. 히브리 전통은 부부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 뿐 만 아니라 주의 율법대로 양육할 것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최소한 3년간은 아이를 품안에서 키우도록 강조한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것 못지않게 키우는 것은 중시하고 그것을 부모 됨의 핵심적인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히브리 전통에서는 친부모가 있는 아이의 양부모가 되려고 하거나 또 자기 자식을 양육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으므로 만약 부모가 죽었거나 기를 수 없는 부적합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입양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친부모에 의해 자라는 것보다 열등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애정을 가진 부모가 길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물

타나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야고보서 1:27), 신명기 16:14에서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라”(신 16:14)고 하셨으며,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신명기 24:19-21)고 하셨다. 또 “제 삼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신명기 26:12)고 말씀하신다. 또한 시편에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 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시 10:14).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시 68:5)라고 말씀하신다.

론 피를 나는 친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 그러나 이 말은 양부모가 기르는 것이 열등하다는 말과 동일시 될 수 없다. 때로는 양부모가 아이를 더 잘 기를 수 있다(신원하, 2004: 259-260).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비기독교적인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 적어도 신, 구약 성서에서 가르치는 바는 비록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만든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낳은 자일 뿐, 조성하고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¹⁶⁾ 이 점에서 아이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는 단지 아이를 세상에 보내는 채널이고, 위탁하여 보호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렇다고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부모는 입양부모라고 할 수 있다.¹⁷⁾

16)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 “태어나게 하다”, “앞으로 나오게 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양에서도 현대 이전까지는 인간의 출산을 의미하는 말을 “to reproduce”(생산하다), “to make”(만들다)가 아닌 “to procreate”(태어나게 하다), “to beget”(출생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부모의 의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이 이 단어의 의미 속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7) 성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결코 소유의 관계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도 말하지 않는다. 자녀는 장성하여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모를 떠나야만 한다고 성서는 가르친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실 육신의 부모가 결합하여 아이를 낳지만 부모가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부모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조성하신 아이를 낳는 것뿐이다. 부모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를 낳아 더 큰 공동체에 내어 보내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진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는 그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 책임을 지닌 청지기이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부모는 입양부모라고 말할 수 있다.

② 교회공동체의 본질과 역할에 따르는 실천적 측면

첫째, 선교적 측면 때문이다. 선교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해 오는 복음화(evangeliz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교회가 사회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을 비인간화하는 모든 구조적인 사회적 악과 불의, 부조리와 모순의 현실을 바로잡는 인간화(humanization)의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변화시키는 것이다(이원규, 2002: 27). 참된 구원은 나 개인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개인과 함께 이 사회의 구조적 악과 모순이 제거되어 사회 자체도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공동체는 단순히 구원방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회현실로부터 도피하여 구원받은 것을 자축하는 소위 선택받은 백성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를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하고 각오를 다짐하며 영적, 사회적 능력을 배양 받는 곳이 교회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는 단순히 인간의 외적인 삶에 관심을 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삶에도 관심을 갖는 생명구원을 목표로 하면서 인간을 회복하고 치료하며 나아가 변환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전인적인 인간회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자라나는 아동의 행복에 그 가치를 두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또한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과 아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양육기능의 역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게 된 아동에 대해서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선교적 개입이 매우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의 권리와 가정의 중요성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처럼 아동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이다. 이

것은 아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동이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할 권리가 있으며, 교회는 이를 해결하고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에 관여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동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이것은 곧 아동의 인간성 회복을 통하여 이들의 진정한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다.

또한 모든 아동은 건전하게 태어나서 따스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다(어린이 헌장 1항). 아동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곳은 가정이며, 가정은 인간생활의 요람이며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삶의 근본적인 터전이다. 가정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함을 제공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좌절된 가족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이와 같은 사랑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고 활동하며 생존한다. 특히 아동에게 가정에서 자랄 권리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 박탈당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이다. 따라서 부모와 사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 혹은 혼외 출산으로 인해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도덕의 타락으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로 태어난 아이, 버려진 아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고아 등등. 이런 경우 버림받은 아동에게는 대리적 기능으로서 다른 가정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정서적, 영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을 통해 성례전식(sacramentalism)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윤리학자 워프하우스키(William Werpehowski)는 기독교적 부모의 소명과 책임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은 세례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William Werpehowski, 1997: 180).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부모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세례는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그 순간부터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도 자식을 세례받게 할 때 그 자식을 이제는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성도공동체에 맡긴다는 의식을 갖는다.

세례에 관련된 부모와 자식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아이는 결코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맡아서 키우다가 어느 순간부터 맡겨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공동체에 의탁하고 내어 보내는 것이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하게 된다면 입양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신원하, 2004: 261). 비록 자기 몸으로는 자녀를 낳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녀 역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자이며, 또 자녀를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서 그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이 사회로 내어보낸다면 그 양부모 역시 부모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우리나라 입양의 현실과 문제점

1. 입양의 역사적 변천과 정부의 입양정책에 대한 평가

(1) 우리나라 입양에 대한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6.25 전쟁 때부터이다. 이때 생겨난 많은 수의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¹⁸⁾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입양에 관한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 형식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졌고, 자녀가 없는 친척의 입양이 국내입양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국외입양은 전쟁고아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영문번역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54년 정부가 사회부 산하에 설립한 혼혈 전쟁고아들의 국외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¹⁹⁾

1961년 국외입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아입양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입양이 국가의 허가를 받은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1966년 개정되었다. 국외입양을 통해 전쟁고아의 수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이동을 유기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50년대 중반 이후 고아나 혼혈아 중심의 요보호아동이 기아나 미아, 미혼모 아동 등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국의 원조가 감소되어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정책을 실시

18) 우리나라의 입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보통 전통적 의미의 입양과 현대적 의미의 입양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입양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 의미의 입양은 가문의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현대적 입양은 주로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은 가족주의에 기반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입양과 아동복지 서비스의 일종인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병존하며 갈등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우리나라 최초 입양기관은 1954년 1월 20일에 설립된 한국아동양양회(현재의 대한사회복지회)이다. 당시 사회부 사회국장이 초대회장을 겸임하였으며, 홀트씨 부부는 한국아동양양회(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한국 아동을 입양한 초기 양부모들 중의 하나이다.

했으나 대안 없이 이루어져 국외입양이 더욱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 국외입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북구 유럽 국가들에 의해 입양을 중단하였으며, 국내입양의 부양을 위해서 1976년 ‘입양특례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1985년에 국외입양 전면중단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기관과 상담기관을 설치해 입양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외입양에 대한 쿼터제를 적용하여 국내입양의 실적에 따라 국외입양을 할당해 주었는데, 이는 입양의 질적 저하와 아동복지의 손상을 가져와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1980년대에 들어와 ‘이민확대와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입양을 전면 개방하였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우리나라의 국외입양 실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자, 정부는 다시 1989년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입양정책을 다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국외입양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장애아동과 혼혈아동을 제외한 국외입양을 전면중단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1994년 국외입양의 중단정책을 취소하였다. 1994년에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입양특례법이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199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김현용 외, 1997).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시 국내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과 입양가족 교육, 홍보 및 대회 등을 위한 입양가족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입양가족에 대한 입양장려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 입양의 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속에서 입양의 풍속을 보면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주로 가계계승과 가문의 생존의 문제로 인해 입양을 하

였던 것이다. 당시에 가계를 계승하는 일은 단순히 한 가문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넘어 그 가문의 생존의 문제였다. 이처럼 입양을 통한 가계계승은 멸문을 피하면서도 지속적인 가문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가장 적합한 수단의 형태로 입양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²⁰⁾ 이때의 입양은 혈통과 종족을 뛰어넘는 입양의 습속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진 것이 6.25로 인하여 발생한 전쟁 고아와 혼혈아를 입양시키기 위한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때 우리나라의 입양의 역사도 어언 50년의 역사가 된다. 그러나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기에, 국외입양²¹⁾ 대상 아동들을 국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저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국외입양을 지속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입양을 주선할 때 반드시 아동의 이익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국외입양이 여전히 많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내입양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변화를 위한 노력 강화와 국내외 입양제도의 전면적인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Committee

20)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입양의 특징을 보면 입양의 대부분의 경우 비록 그 촌수가 멀더라도 같은 동성과 동본을 근간으로 하는 혈족과 친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혈족과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입양의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다. 즉 입양이 피 입양 당사자의 안녕과 복지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보다, 주로 입양을 행하고 있는 당사자, 혹은 그 당 가문의 지속적 승계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다.

21)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시설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입양을 지속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입양의 대안이 반드시 시설보호만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해외입양의 대안도 반드시 국내입양만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대개의 경우 세계 2차 대전 이후 해외로 아이들을 보낸 경험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해외입양을 중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보호아동의 방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과 이미 발생한 요보호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보호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한편 정부에서도 국내입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지원²²⁾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사회문화로 이어오는 혈연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비밀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경제적인 지원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 보건복지부가 입양에 대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입양이야기를 초·중·고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가족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입양아동 호적기재 방법을 개선하며, 입양가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계속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다(보건복지백서, 2004).

특히 국내입양 활성화²³⁾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내 입양된 아동의 의료보호, 교육비 지원,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양육보조비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입양가정들의 모임을 위한 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실종아동이나 미아 등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기아나 미아는 발견된 후 6개월 이내에 입양되는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년

22)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확대시키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국내입양 시책을 보면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월 50만원, 의료비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 9월부터는 의료비 지원 외에 상담, 재활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교생 학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양아동이 우선 입소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이 2003년 2월 9일 개정됨으로써 내년부터는 모든 입양 아동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게 되었다.

23) 정부(보건복지부)는 최근(2005년 9월 1-2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아동 담당공무원과 입양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관계자 등 전국의 일선현장의 입양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 입양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이때 다루어진 토론 주제는 ▪ 입양에 대한 국민개선 및 참여방안 ▪ 입양가정의 확대방안 ▪ 요보호아동의 적극적인 입양조치방안 ▪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원방안 ▪ 국내입양 사후관리 방안 등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5월에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시설장은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허남순, 2005: 112).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정부의 시책이 종합적인 아동복지 차원에서 입법화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의한 임시방편으로 입양을 아동보호의 수단으로 채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에 많은 변화²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입양의 경우 정책목표가 불분명하고 입양기관의 충분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오정수, 2005: 11). 또한 입양을 위한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배치와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도감독, 양육비의 지원강화, 입양에 대한 국민 인식전환교육, 그리고 헤이그 협약²⁵⁾을 위한 준비 등 다각도의 대책이 요구된다.

24) 예를 들면 빈곤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빈곤가정의 생활비, 어린이 집 보육료,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편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뿐 만 아니라 가정봉사원 서비스, 임대주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장기 그룹 홈 지원, 모자시설 입소, 직업훈련, 자립을 위한 지원의 제도를 확대해 가고 있다. 그 외에 시설 위주의 아동보호에서 탈피하여 친인척 가정위탁이나, 대리양육, 일반가정위탁 등의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소규모 그룹 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5) 헤이그 협약은 1993년 5월 29일 국제 사업에 관한 제 17차 헤이그 회의에서 결의된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아동의 파행적 입양을 방지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 입양을 그 대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국가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 회의에 참석한 나라로 멤버국이기기는 하지만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의 체결국이 됨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 입양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사업 현황과 실태

① 국내의 현황

입양사업은 크게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국외입양과 국내입양이 97년부터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는 입양가정에 대해 소득세 인적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왔고, 1989년 11월부터는 양부모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50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결혼 후 3년이 경과해야 입양이 가능했던 것을 3년 이내라도 불임의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1996년 이후에는 국외입양을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요보호아동(장애아, 혼혈아 등)에 국한하여 국외입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05년도에 들어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또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표 1> 국내의 현황

(단위: 명)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내입양	1,412	1,426	1,726	1,686	1,770	1,694	1,564	1,641
국외입양	2,057	2,443	2,409	2,360	2,436	2,365	2,287	2,258
계	3,469	3,869	4,135	4,046	4,206	4,059	3,851	3,899

자료: 보건복지부, 2005.

② 성별현황

<표 2>에서 보듯이 90년대 이후 국내입양의 새로운 특징은 여아의 입양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내 입양아중 여아의 비율은 98년 56%, 99년 58%, 2000년 56%로 꾸준히 남아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은 부부일수록 여아를 선호한다고 한다. 여아가 남아보다 키우는 재미가 있고, 혹시 커서 입양사실이 아이에게도 알려져도 여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덜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국외입양은 남아의 입양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성별 현황

(단위: 명)

년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남	여	계	남	여	계
1997	616	796	1,412	1,124	933	2,057
1998	634	792	1,426	1,408	1,035	2,443
1999	714	1,012	1,726	1,374	1,035	2,409
2000	715	971	1,686	1,422	988	2,360
2001	743	1,027	1,770	1,364	1,072	2,436
2002	632	1,062	1,694	1,379	986	2,365
2003	543	1,021	1,564	1,367	920	2,287
2004	494	1,147	1,641	1,385	873	2,258

자료: 보건복지부, 2005

③ 아동상태별 현황

<표 3>에서는 국내입양 중 장애아동은 97년 12명, 98년 6명, 99년 14명에 이어 최근 2004년에는 7명으로 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입양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정부가 장애아 입양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장애아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 이동상태별 현황

(단위: 명)

년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정상	장애	정상	장애
1997	1,400	12	1,273	784
1998	1,420	6	1,526	917
1999	1,712	14	1,584	825
2000	1,668	18	1,726	634
2001	1,756	14	1,693	743
2002	1,678	16	1,538	827
2003	1,544	20	1,638	649
2004	1,634	7	1,553	705

자료: 보건복지부, 2005.

(2) 국내 입양사업의 문제점

아동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길러져야 하며, 그것도 우선적으로 국내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외국의 훌륭한 가정에서 길러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다. 이것은 1993년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아동의 시설보호는 가정에서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을 예외적으로 수용, 보호하는 조치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동의 가정보호보다 시설보호가 보편적이며, 극단적인 배타적 사상과 입양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입양제도의 법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① 입양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점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념 하에 있었으며 현재에도 혈연중심의 가족관이 지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혈연이 아닌 아동에 대한 입양은 사회적으로 크게 용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국내입양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내입양 아동의 복지를 위한 입양보다는 가정의 무자녀 문제 또는 무남, 무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위주의 입양이 대부분이다. 또한 입양에 대한 잘못된 지식²⁶⁾과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부모들이 비밀입양²⁷⁾을 원하고, 혈액형 및 외모 등이 같기를 원하는 등 입양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연장아나 장애아, 질병아, 미숙아들의 국내입양은 정상아동의 입양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는 국가 및 사회가 아동에 대한 권익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을 아동복지를 위한 것으로 인식 하기보다는 부부간의 문제나 가족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최근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입양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입양정책은 우리 사회의 입양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모 및 가족위주의 입양 등의 사회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채 오직 실적 위주로만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내입양정책에는 혈연위주의 입양의

26) 입양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정보나 생각이 사실상 정확한 연구나 사실에 근거한 것 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지식이나 생각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아이가 입양을 하면 가출하거나 잘못될 것이다. 둘째, 아이의 혈통이나 유전병을 알지 못하므로 병이 있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셋째, 아이가 성장하면 생부모(biological parents)를 찾아갈 것이다. 넷째,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처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만이 입양할 수 있다. 여섯째, 입양한 부모나 입양아는 완벽해야 한다와 같은 것이다.

27) 입양부모가 마치 입양아를 출산한 것처럼 행동하는 비밀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아의 입양이전의 과거를 단절시키는 상태가 되기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입양아의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감이나 존재적인 지속감은 형성되기 힘들게 되며, 이것은 양부모와 건강하며 신뢰에 바탕을 둔 탄탄한 부모 자녀관계 성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입양 및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② 법률상의 문제점

입양법의 목적은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근거를 두어왔으며, 민법은 전통적인 집안의 승계와 조상숭배를 위한 제사의 계승을 위해서 혈통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왔고, 입양특례법은 근대적 양자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조용원, 1995: 50). 물론 우리나라는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근대적 입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졌지만, 입양특례법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 법이 국내입양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실이나 변화를 깊이 있게 고찰하지 못했던 결과로 입법의 미비점이 노출되었으며, 입양업무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기원, 안현애, 1994: 24).

이에 1995년 1월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되기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이 있다. 최근(2005년 3월 31일)에는 본 특례법이 개정되어 입양기관의 의무로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기계 존속을 찾는 구체적인 내용 및 국내입양 상담전문가 교육지원, 입양기관의 시

28) 입양법의 첫 번째 목적은 아동이 그의 원래가정에서 불필요하게 분리되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요보호 아동을 적절하지 못한 부모에 의해 입양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친부모 특히 미혼모로 하여금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부모로 하여금 입양아동의 생물학적인 유전 및 그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친부모로부터의 아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기준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안들은 근대의 입양의 목적에 맞게 조정되고 통일성있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③ 입양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입양은 크게 임의입양²⁹⁾과 기관입양³⁰⁾(장인협, 1993: 335-336)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독립입양에 있어서 친척간의 혈족입양이나 친부모가 직접 양부모와 상의해서 입양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입양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금하고 있다. 입양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정부의 재정 원조가 없기 때문에 입양기관이 영리성을 띄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입양에 대해서는 재정보조를 하지 않고 행정지시로 해외입양의 보상금으로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 앞선 기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편승하여 그들 기관 간 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등 기관의 성격이 봉사단체에서 수익단체로 변모하였다. 즉, 국내입양 수수료가 입양대상 아동의 양육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

29) 독립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서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아는 사람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 3자를 통해 입양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친부모를 통한 입양은 직접입양으로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로 아동을 점차적 비공식적인 유치의 단계를 걸러 입양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도와와 호적법의 절차를 거쳐 성립하며 합법적인 입양이다. 제 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에는 회색시장(gray market)을 통한 입양이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역시 친부모와 법정동의를 필요하며, 양부모는 기본적인 법적 서비 비용이나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익이 목적이 아닌 선의의 중개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합법화되어 있다(성혜영·김연진, 1997: 242-244)

30) 기관입양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 하여금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입양절차를 밟는 경우로써, 양쪽 부모 및 가정을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가정과 연결지어줌으로써 입양후의 문제가 적은 편이다. 기관입양의 경우 서류상의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입양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며, 또한 입양가정은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구비된 가정환경이어야 한다.

에 입양기관은 어려운 재정을 국외입양에 의한 지원금 또는 찬조금으로 재정의 부족을 보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양기관이 국외입양에 의한 지원금 및 찬조금으로 재정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국내입양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국내, 외 입양의 결정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내입양의 활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IV. 입양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1. 한국교회의 입양사업에 대한 인식과 과제

입양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혈연과 가문을 중시해 온 유교문화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입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것은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교회가 부흥과 성장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기독교 신앙의 삶과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문제는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기독교 신앙에 따르는 선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적 봉사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가르침에 소홀해 온 신앙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³¹⁾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는 신학적 관심에도 반영

31) 지금까지의 한국교회는 사회복지를 주로 교회의 성장과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왔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선교초기부터 한국전쟁 후까지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사를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만 한국교회가 외국의 교단적 후원과 배경, 그리고 선교단체나 원조기관들과 손을 잡고 이들의 공식적인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70년대 이후 외원기관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한국교회가 그 공백을 매워야 할 때는 모두들 손을 떼고 개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사회복지가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지, 교회에 득이 되지 않을 때는 철저히 외면하였다고 본다. 최근에 들어와 사회복지사가 교회성장에 유익이 된다는 사고에서 다시 사회복지사에 역점을

되어 입양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기독교 사회 윤리적 논문들을 매우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에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나 사명감,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 없이 실행되어 왔다. 특히 입양문제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념과 혈연 중심의 가족관이 기독교인의 의식 속에 아직까지 깊이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입양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앞에서 언급한 교회공동체가 입양문제에 관심을 할 이유에 대한 분명한 검토와 한국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을 인식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국내적으로는 가장 큰 종교집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인구 비율로 볼 때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다. 또 작은 나라이지만 대형교회가 집중된 나라로 알려져 있기에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의 많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한국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입양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교회공동체가 입양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회적 차원이나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입양문제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과 선교적 도전 그리고 신앙의 실천적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아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어라고 명하시고 있기 때문이다(시편 82: 2-3).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한국교회가

두고 있는 인상을 갖게 한다. 특히 80년대 중반부터 교회성장의 정체와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 할 때는 사회복지가 교회의 이미지를 쇠신하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추측들에 힘입어 교회성장의 위협을 느끼는 많은 교회들이 사회복지를 통한 성장을 꿈꾸며 이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의 자세와 태도는 성서가 가르치는 사회봉사의 본래의 정신과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한국교회의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보여준 사랑과 화해, 포용과 사회통합의 응답의 차원에 서라도 교회가 입양문제를 보듬어 풀어가기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한국교회 입양사업에 대한 역할과 프로그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교회가 입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앞설 수 있는 의식집단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발표자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교회공동체는 입양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성서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그리스도께 입양된 자라는 사실과 가족개념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성경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인 실천적 과제로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한국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한국교회 공동체가 입양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고귀한 선교행위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풀어가는 고귀한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발표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입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규범 제시자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입양주제에 대한 의미와 입양의 양태를 통해 사람들이 행해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또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섬기며 돌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출애굽기 23:6-9, 레위기 19:9-10, 신명기 24:14-15). 이러한 요구는 단지 말로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정되었다. 가령 십일조 제도, 안식일 제도 그리고 희년제도 등은 제정일치 시대에 종교적인 차원 뿐 만 아니라 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에 기초해 입양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행동규범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역할에는 입양을 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입양과 관련한 설교, 입양주일을 실시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전환과 또 입양주일날 입양아동에게 세례를 줌으로 입양의 신앙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회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입양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일에 먼저 앞장설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이슈 제기자(issue-initiator)로서의 역할이다. 이슈란 어떤 문제가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켜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관련된 사람의 이해 갈등이 나타난 경우이다. 이때 이슈 제기자란 일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사회가 입양을 하는데 있어서도 공개입양보다 비밀입양을 하는 것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을 대신해서 이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를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인식시키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이슈 제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교회의 이러한 역할들은 사회행동가(social actor)로서 그리고 의식집단(conscious group)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다(강춘근, 2003: 128). 이를 위해 입양 캠페인이나 공개입양 행사 그리고 입양 세미나 및 포럼 및 공청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³²⁾

32) 미국에서는 입양 캠페인을 1996년도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하여, Adoption 2002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의 목적은 미국군내 위탁입양을 2002년도(6년 동안)까지 배로 늘리는 것이었다. 이 전국 입양 캠페인으로 1996년도 28,000명 입양, 1998년도에는 36,000명 입양, 1999년도에는 46,000명이 입양됨으로 미국의 국내입양이 증가되었고, 2002년도에는 56,000명을 위탁아동입양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캠페인과 공개입양 행사 그리고 공청회나 포럼은, ‘낳은 정만큼 기른 정’이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며, 입양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반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좋은

세째, 서비스 제공자와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입양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은 지역사회에 속한 빈곤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도울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교회의 규모와 성도 수, 재정능력 그리고 시설보유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입양한 가정을 교회에 속한 여러 가정이 후원하는 형태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고 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입양가정의 부담도 줄게 되고 입양 부모 두 사람만이 입양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가족공동체로서 입양아를 키우는데 동참한다는 큰 장점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양 기관과 연합 또는 연대하여 행사를 준비하며 방문 격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양아와 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이나 해외입양아의 국내 방문 시 홈 스테이나 공항마중, 통역 등의 자원봉사 활동 등도 가능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정부나 사회복지기관들과는 달리 지역사회 주민이 곧 교인이므로 주민의 문제를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이러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그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혜대상자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교회 내 입양에 대한 공과 개발, 불임 및 미혼모 상담 및 교육, 입양부모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 입양가족 독서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속한 입양아동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재원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재원은 교회에 부속된 토지와 건물 그리고 각종 헌금이 있다. 그 중 십일조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목회자의 생활 뿐 만 아니라 고아와 같은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입양아동이나,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각 교단이 정한 사회봉사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형편과 상황에 맞게 입양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구역예배 때 드리는 헌금을 지역에 있는 입양아동이나 입양가족을 위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모임의 성격과 정신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양의 날’과 관련하여 ‘입양주일’(입양주간) 행사를 실시함으로 여기에 나온 재원으로 지역사회의 입양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이다. 사례관리자는 수혜대상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서비스 사용계획을 세우고, 수혜대상자와 자원을 연결시키고,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서비스 전달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교회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내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찾아낸 후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를 연결시켜 주고, 양자간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교회는 입양가족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에게 힘이 되고, 자원제공자에게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것에는 입양가족 성공사례 발표라든지, 또는 입양아 및 입양부모 자조 모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책형성 과정 개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여행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격을 받아 늘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 구조된다면 강도를 소탕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여리고로 내려가는 주변 환경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입양문제의 성격

에 따라 입양에 대한 정부정책의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입양이나 입양가족을 위하여 정책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성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이나 입양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성서적으로 합당한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정책대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정책결정자들을 적극적 설득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결정자들이 세속적 합리성 외에 성서적인 정의가 반영되는 통전적인 대안채택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입양을 위한 NGO단체나 기관을 설립하여 입양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입양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더불어 교회가 입양을 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입양문제를 언급하는데 다른 어떤 종교보다 가장 의미 있는 위치와 입장에 서 있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어린이 현장에서 선언한 “모든 어린이가 건전하게 태어나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랄 권리”(어린이 헌장, 1항)를 누릴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가정에서 자랄 권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박탈당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권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양자체는 무엇보다 ‘아동의 행복’

에 그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입양할 능력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인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들은 삶의 존재양식이 혈연중심적인 가족관과 문화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간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행위를 언약관계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우리 사회 속에 드러내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³³⁾

따라서 한국교회는 우리 아기는 우리 손으로 반드시 키워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과거 외국으로 내 보내진 아이들을 다시 찾아내고, 나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아이들, 또 먼 외국의 아이들까지 주님의 피 묻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입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입양 50여년의 역사 속에서 미국과 유럽에 진 사랑의 빛을 한국교회가 갚는 일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서가 가르치는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입양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사회보다 늦게 출발하였다. 그러나 시작은 늦었지만 이 일에 더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할 때다. 이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라는 복음의 핵심명제를 가슴에 새기고, 이 사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영혼을 향해 떠나

33) 한국입양홍보회(MPAK)의 회장인 한연희씨는 입양배우기 세미나에서 “입양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은밀한 선행이 아닙니다. 입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자녀 삼는 것입니다. 입양은 결혼제도와 같이 언약관계를 맺는 새로운 가족관계”로 바라보며 입양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촉구한 적이 있다.

는 고귀한 선교행위를 겸손하게 감당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행위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인 돌봄과 책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되어 지는 것이 드러날 때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진정성도 확인되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강춘근외 (2005), 『기독교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양서원.
- 강춘근 (2003), “빈곤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통합연구』 16(2), 통합연구학회.
- 강춘근 (2001), “사회복지선교를 위한 교회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성 (2005),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서울, 나눔의 집.
- 김민정 (2000), “입양가족,” 『현대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 박인선 (2005), “해외입양에 대한 사회복지적 제언,”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 1호, 통권 98호, 3-22.
- 박정란·서홍란 (2003), 『아동복지론』, 서울, 양서원.
- 배태순 (2000),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 보건복지백서 (2004), 서울, 보건복지부.
- 성혜영·김연지 (1997), 『아동복지』, 서울, 동문사.
- 신민선·박용순 (2003), 『기독교와 아동복지』, 서울, 예영.
- 신원하 (2004), 『시대의 분별과 윤리적 선택』, 서울, SFC.
- 신원하 (2004), “하나님의 자궁사랑: 입양신학 토대를 향한 시론,” 『기독교사상』, 250-262.
- 오정수 (2005), “아동정책의 모형과 전달체계,” 200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한국 사회복지의 딜레마, 한국아동복지학회.
- 이상훈 (2005), “입양문제에 대한 신학적 일고,” 『정신문화연구』 28(1), 통권 98호, 3-46.
- 이원규 (2002), 『한국사회문제와 교회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장인협 (1993),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 조용원 (1995), “국내입양의 구성요소와 저해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일섭·최성재 공편 (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출판.
- 한인입양홍보회, 『아름다운 입양 이야기』
- 황수섭 (2005), “미혼모와 유기아동의 실태와 교회의 입양운동전략,”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 허남순 (2005),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아동복지정책 및 입양제도 개선방향,” 홀트창립 50주년 국제세미나 『입양 50년 현황과 과제』, 홀트아동복지학회.
-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org>.
- Wright, C. J. H. (1989), *Living as the People of God: The Relevance of old Testament Ethics*. 정옥배역,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on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U.N. Doc. CRC/C/15/Add.197.
- Scot, J. (1992), *Adoption as Sons of God*, Tuebingen: J.C.B. Mohr.
- Kadushi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s*, N.Y: Macmillan.
- Perdue, L. (1997), The House, Old Testament Theology, and Contemporary Hermeneutics,” in *Families in Ancient Israel*, et al. Louisville, Kent: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Zuck, B. R. (1996), *Precious in His Sight: Childhood and Children in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Werpehowski, W. (1997), “The Vocation of Parenthood,” *Journal of Religious Ethics*, Vol 27. Spring.

Abstract

The Problem of Adoption and Its Role in Korean Church

Chun Geun Kang* and Min Sun Sin**

Adoption is very important theme raised by requesting of historical, social situation, as a dimension of legislative system and social welfare service so that the child may be well grow up in ou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ek the very christian alternation on what is social duty and its role in Korean church about the problem of adoption for the child in such as a question. Church community has both a mean and play an important part with carrying out practical task of faith to solve social problems according to a religious function and social it. Also We think that Korean church can accomplish the kingdom of God and its will through solving social problems by approaching in task of mission as the problem of adoption.

Therefore We would suggest that what is biblical and theological evidences to concern for adoption, or reason of having concern for problem of adoption in

* Pastor, Graduate School, Chonan University

** Lecturer, Sungkyul University

church community. And then We would research what are situations and problems in our country. Through this research, We would examine that what is a role of Korean church for the problem of adoption as a practical task of own faith. Finally this article would show a presenter of norm, of issue, an offerer of service, a developer of program, a supplier of fund, a manager of case, and a participant in processing of policy forming as roles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business for adoption in Korean church.

Key words : Adoption, Domestic adoption,
Overseas adoption, Business for adoption,
Role in Korean Church